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내 용

해양수산부는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어선)용기자재 무상 이동 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수 산장비 임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어업용(어선)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을 추진 (국비 50%, 지방비 50%)하고 있으며, 이에 울산광역시는 [표1]과 같이 최근 3년 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을 추진하였다.

[표1]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사업비			사업내역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180,000	90,000	90,000	
2015	60,000	30,000	30,000	부품교환 등 수리 19,400천원 인건비 16,640천원 여비 등 관리비 23,360천원
2016	60,000	30,000	30,000	부품교환 등 수리 29,145천원 인건비 17,160천원 여비 등 관리비 13,695천원
2017	60,000	30,000	30,000	부품교환 등 수리 28,210천원 인건비 17,680천원 여비 등 관리비 14,110천원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해양수산부의 “수산장비 임대사업집행지침”(이하 “사업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은 어선에 사용되는 소규모 부품의 교체

비용을 1인당 1회 70천원, 연간 2회까지 무상으로 교체하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하고, 부품이 아닌 연료유 및 엔진오일 등은 무상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는 어선 이동수리소 대행업체가 월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 정산서를 제출하면 그 내역을 검토하여 사업집행지침에서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엔진오일 등 오일류 교체에 대한 경비를 제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울산광역시는 2015년에 이동수리소 대행업체가 제출한 월별 정산내역 중 오일류 교체(미션오일 등 5종 112개 2,360천원)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를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어선 이동수리소사업 부적정 집행 현황

연 도	부적정 집행 내역	비 고
2015	○ 오일류 5종 113개 2,360천원 - 미션오일(88개) 2,200천원, 유압오일(21개) 105천원, 기어오일 20천원, 감속기오일 30천원, 구리스 5천원	오일류는 '14년도까지만 지원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주의]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산 시 사업내역 적정성 확인 등 사업집행지침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